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목 차

1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3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4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5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6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37
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8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9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10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11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9
12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	75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3. 2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3. 24.

2. 제안이유

-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위원 명칭변경(안 제9조)
 - 1) 건설과장 ⇒ 건설교통과장
- 나. 법령입안원칙에 맞게 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 정비(안 제15조~제17조)
 -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전문분야별 등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함
- 다. 이미 실효된 규정 정비(안 제18조, 조례 제2634호 부칙 제3조)
 - 1) 거창읍 지역회의에 관한 특별규정 삭제
 - 2) 유효기간(2021. 12. 31.까지)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2. 28.~3.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번 조례 개편안은 2023. 1. 9. 행정조직 개편으로 안전건설국이 신설되고, 국 및 과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관련 사항을 수정하였음.
- 또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제한적인 사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음.
- 덧붙여 제18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에 있어 거창읍 지역회의에 대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읍·면 지역회의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였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22년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 2) 위원회의 구성 나) 위원회의 구성 규정 P222
 - ~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 3) 위원회의 운영 라)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P232
 - ~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한다.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3. 23.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3. 3. 24.

2. 제안이유

-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대비로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이전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등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나. 공공기관등의 유치위원회의 기능·구성 등을 정함(안 제3조~제10조)
- 다. 유치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정함(안 제11조)
- 라. 이전공공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12조)
- 마. 이주직원 이주정착 장려금 및 자녀 장학금 등 지원을 정함(안 제13조)
- 바. 이전공공기관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14조)
- 사. 유치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정함(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2. 20.~3. 1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전부반영

5. 검토의견

- 이 조례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347개의 공공기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 산하기관, 교육연수 기관 등이 해당됨.
-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발빠른 대응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유치활동 지원(안 제11조)
- 나.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 다.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 라.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 마. 유치기여자 포상금(안 제1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이전공공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에 따른 지원 비용추계는
어려운 상황임

작성자 전략담당관 류현복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차.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이전을 위한 업무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

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2.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3.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1의2·1의3. (생략)

2.~9. (생략)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생략)

12.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1.>

⑦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12. 21.>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방세 납부 현황
3. 사무소 소재 현황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

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707호, 2022. 6. 21., 일부개정]

제3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出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6.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제16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 5. 29.>]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10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 3.~5. (생략)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3. 2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3. 24.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사무과에 신규업무 추가 및 기준인력 증원(정책지원관) 반영 등 조직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함(안 제25조)

- 1) 정원 총수 : 증 3명(793명 ⇒ 796명)
- 2) 의회사무기구 정원 : 증 3명(17명 ⇒ 20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 1)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 3명

가) 현행 : 793명(본청360, 의회17, 직속기관149, 사업소41, 읍42, 면184)

나) 변경 : 796명(본청360, 의회20, 직속기관149, 사업소41, 읍42, 면18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 14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3. 15.~3. 2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2022. 1. 13.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신규업무 추가 및 기준인력 증원 등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증원 3명

나. 관련조문 : 정원 총수(안 제2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 계
세출	군 비	140	140	140	140	140	700

3. 관련 의견: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으로 현안업무 추진과 행정업무 효율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2023년 인건비 : 140백만원

가. 정원 3명 증원 * 47백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권 해 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581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3. 2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3. 24.

2.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시행 2023. 3. 2.)으로 물가수준에 맞추어 숙박비를 합리적으로 인상 조정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내여행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삭제함(안 제4조, 별표 2)
 - 1) 조례로 달리 정하지 않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 2) 근거 : 제6조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준용
- 나. 인용 법령 정비(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46조

2)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2. 21.~3. 13.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2023. 3. 2.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거창군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와 별표 2를 삭제하고 제6조에 근거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식비 등의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별표 2의 비고 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1. 5. 25.] [대통령령 제31706호, 2021. 5.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의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계급별 여비 지급 구분 일부를 정비하고,
~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22. 5. 9.>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현행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와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

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

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단위: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5.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3. 2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3. 24.

2. 제안이유

-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신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장의 업무에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업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 정비
 - 1) 실비변상 ⇒ 실비 보상(안 제명·제1조·제4조)
 - 2) 어법과 어순에 맞게 문장 정비(안 제5조·제6조)
- 나. 현행화에 따른 신설(안 제2조·제4조)
 - 1) 업무 :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
 - 2) 실비 보상 : 회의참석수당
- 다.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신요금 지원 신설(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 21,36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2. 24.~3.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제6조제6항에 통신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이장에게 매월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다만,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보조, 그 밖에公款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이장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는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이장의 업무 수행 시 필요한 통신비 지원

나. 관련 조문 : 사기진작(안 제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21,360	64,080	64,080	64,080	64,080	277,68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통신요금 지원

가. (1차연도) 이장 267명 X 20,000원 X 4개월 = 21,360,000원

나. (2차~5차) 이장 267명 X 20,000원 X 12개월 = 64,080,000원

작성자 행정과장 권해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9. 30.]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별표 4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① 경비성격: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② 기 준 액
 - 통·리장: 기본수당 월 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연 50,000원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통신비 지원관련 의견22-0140)

1. 질의요지

- 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나. 질의 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2.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하면서,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보조

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장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단순한 행정지도나 예산조치만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주민에 대한 급부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만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장에게 통신요금과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인데,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이러한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3. 2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3. 24.

2. 제안이유

-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활동을 정함(안 제3조)
 - 1) 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 2) 활동 : 교육·문화·체육 활동,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일상유지를 위한 필수활동 등
- 나. 지원 신청 및 결정을 정함(안 제4조)
- 다. 바우처의 사용지역을 정함(안 제5조)
- 라. 가맹점의 등록을 정함(안 제6조)

- 1) 등록 시설 : 체육시설, 문화시설,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 2) 등록된 가맹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마. 점검, 이월 및 사용기한, 대금의 지급을 정함(안 제7조~제9조)
- 바. 바우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청소년기본법」 제49조
- 나. 예산조치 : 2023년 추경예산 592,000천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1. 30.~2. 2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전부반영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는 만13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원~20만원 상당의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2020년 경남 고성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이어서 옥천군, 보은군, 청양군 등에서 같은 목적으로 시행 중임.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나. 관련 조문 : 지원 대상 및 활동(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군비	592,000	558,100	528,800	510,400	493,600

3. 관련 의견

관내 청소년들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 역량강화 및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지원대상 : 13세~18세 청소년

나. 사업비 : 592,000천원 정도

- 1) 13세~15세 바우처 : 180,000천원(100천원x1,800명)
- 2) 16세~18세 바우처 : 380,000천원(200천원x1,900명)
- 3) 운영비 : 32,000천원(시스템 22,000+ 홍보 등 10,000)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

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
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
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
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
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
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3. 2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3. 24.

2. 제안이유

- 거창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대부료를 감면하고,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군수가 취득한 재산을 신설하는 등 공공기관의 군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부료 감면을 신설함(안 제30조)
 -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 3) 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 나. 조성원가로 매각 할수 있는 재산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군수가 취득한 공유재산을 추가함(안 제3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3. 2.~3. 2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통해 군민의 공공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제7항에 대부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제33조(조성원가 매각)에는 제5항을 신설하여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군수가 조성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경우 조성원가 매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채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채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2조(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할 때에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생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라 함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혁신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7.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8.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을 등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46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신규조문대비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53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u>외국인을 위한 국가산업단지</u> 를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u>산업단지지정권자는</u>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u>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u>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를 「 <u>외국인투자 촉진법</u> 」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u>국가산업단지</u>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u>외국인에게</u>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u>산업단지</u>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u>외국인에게</u>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3. 2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3. 24.

2. 제안이유

-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1) 현행 : 2023년 12월 31일
 - 2) 변경 : 2028년 12월 31일
-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원칙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전 조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41조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 5,992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2. 23.~3. 1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함.
-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거창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관련 조문 : 제3조(설치와 세입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 연도 (2023년)	2차 연도 (2024년)	3차 연도 (2025년)	4차 연도 (2026년)	5차 연도 (2027년)	합계
군비	4,000,000	10,000,000	26,700,000	-	-	40,700,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거창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가. 토지보상 등 : 100억원

나. 조성사업비 : 367억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질의제목: 대전광역시의회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 의견17-0201 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관련문서: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 - 2002(2017.7.20.)

1. 질의요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

2. 의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이하 “대전시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대전시조례안”이라 함)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전시조례안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공포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산정되어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조례·규칙의 시행일은 제정·개정된 조례·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 201. 참조). 대전시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현행 2020년에서 2025년까지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의 효과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점이 대전시조례안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전시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개정조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포·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7. 5. 18. 의견제시 17-0101 참조), 만약 대전시조례안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대전시조례가 사실상 2020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3. 2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3. 24.

2. 제안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3. 5. 16.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삭제(안 제3조)
 - 1) 법률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에 해당
 - 2) 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
-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례에 따라 정비(안 제2조·제5조·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 30,0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2. 23.~3. 15.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음
- 2022. 11. 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16조의2제1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존속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어짐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

나. 관련 조문 : 세출(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지원대상 : 발전소주변지역인 남상면, 신원면

2. 주민숙원사업비 : 30,000천원

가. 남상면 : 15,000천원

나. 신원면 : 15,000천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관련법령 발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일부개정, 2023. 5. 16. 시행]

◇ 개정이유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연장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관리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하고 있는 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23. 5. 16.)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3. 2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3. 24.

2. 제안이유

-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한 우리지역 군민에게 널리 영향을 미치는 지역 문화시설의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군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제처 법령입안원칙에 맞게 정비(안 제1조·제2조·제6조)
 - 1) 목적 :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이므로 인용법령 삭제
 - 2) 정의 : 법령의 정의와 같은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 등의 표현방식에 맞게 정비
- 나. 지역 문화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정비(안 별표)
 - 1) 신설 :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유지관리
 - 2) 삭제 : 군민을 위한 영화관 활성화 사업, 지역문화를 알리기 위한 관광투어 프로그램 운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9조
- 2)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8조
- 3)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 280,0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3. 3.~3. 2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2015.12.10. 제정하였고, 2021.3.24.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의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음.
- 이번 개정사항으로는 제1조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를 삭제하고 “거창군”으로 정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조례가 아닌 우리 군 자치 조례임을 명확히 하였음.

-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는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와 중복되어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조례 제2호(정의) 각 호를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타당함.
- 또한 정의 규정된 용어를 그 자치법규의 한두 조문에서만 사용하는 데 그칠 때에는 별도로 용어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해당 조항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1회만 나오는 제6조제4항 “지역예술인”의 정의를 해당 조항에서 용어 뒤 괄호 안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군수가 지역 문화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업내용은 별표에 명시하고 있음.
- 그 중 지역문화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분야에서 지원범위를 영화관과 관광투어 프로그램에 한정하던 것을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유지관리”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양한 민간 문화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유지관리

나. 관련조문 : 지역문화 지원사업(안 별표)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1차연도 (2023년)
합계	400,000
도비	120,000
군비	280,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3년)

1. 2023년 일시 지원사업

2. 아시아1인극협회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 400,000천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조 호 경



관련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시행일: 2023. 3. 28.] 제2조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전문개정 2016. 2. 3.]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관광사업 지원기준(제4조 관련)

사업분야	세부사업
1. 관광객 유치	가. 국내외·단체 관광객 유치설명회·팸투어 나.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다. 관광택시 운영 라.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마. 지역 문화유적·관광지의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 관광상품 또는 관광자원 개발·판매	가. 관광상품 또는 관광자원 기획·발굴·판매 나. 관광기념품·관광사진 공모전 및 경진대회 참가 다.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 관련 기관과 연계한 다음의 사업 1)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지 등 관광자원 개발 2)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3. 관광상품·관광 홍보	가. 관광홍보 마케팅 나. 관광시설의 홍보 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품권 또는 물품 지원 1) 스탬프 투어자 2) 팸투어 참여자 3) 관광상품 및 관광지 등의 소셜미디어 홍보 참여자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등 관광복지 증진	가. 제4조의2 각 호의 사업 나. 그 밖에 관광복지 증진 사업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3. 2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3. 24.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1) 현행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 변경 : 2028년 12월 31일까지
- 나. 세입·세출 등 특별회계 규정 입안원칙에 맞게 정비(전 조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41조
 -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 989,169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3. 14.~3. 2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전부반영

5.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함.
-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게 되면 사실상 2023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으므로
-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하면 될 것임.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의료급여사업 효율적 수행

나. 관련 조문 : 세출(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계	989,169	1,004,436	1,019,703	1,034,970	1,050,237	5,098,515
국비	120,254	120,254	120,254	120,254	120,254	601,270
도비	30,064	30,064	30,064	30,064	30,064	150,320
군비	838,851	854,118	869,385	884,652	899,919	4,346,925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집행 도모

2. 의료급여의 현금급여지원 : 135,125천원

가.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지원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지원

3. 의료급여 행정경비 지원 : 15,193천원

4.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및 반환금 : 838,851천원

가.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의료급여비 전체의 4퍼센트) 예탁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정순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의료급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4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 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 12. 31.>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3. 2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3. 24.

2. 제안이유

- 사업시행자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은 거창군이 시행자로 지정받아 부지를 조성하고 적십자사에 매각할 경우, 개발 및 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되어 현저히 공공성을 훼손하며,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기본원칙에 반함(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923(2022. 11. 3.)
 - 대한적십자사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아 사업 부지의 2/3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가 필요
- `23. 3. 3. 거창군↔대한적십자사間 협약체결을 통해 거창군에서 부지 조성 후, 현) 거창적십자병원 부지 및 건물을 교환하는 방식 추진 결정
- 출산·육아·복지 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행복맘커뮤니티센터 등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중심의 체계화된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군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명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업비 : 15,700백만원
- 위치 : 거창읍 일원
- 주요내용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건립 등을 위한 부지조성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 18개과/300병상/응급의료센터 등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산후조리 및 신생아를 위한 모자동실
 - 행복맘커뮤니티센터 건립 : 영아·임산부관련 통합 서비스 지원

4. 추진경과

- 2019.11.11. :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복지부)
- 2021. 7. 16.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적십자사)
- 2023. 1.13.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타당성조사 최종 용역보고회
 - 사업규모, 진료과목 및 병상 수, 직원 수 등
- 2023.1. ~ 8. : 적십자병원 의료운영체계 용역(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 편익 추가발굴 등 통해 예타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추가용역
- 2023.2.28.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계획 수립
- 2023. 3.3. : 거창군↔대한적십자사 간 협약 체결
 - 거창군에서 부지를 조성하고 현) 거창적십자병원 건물 및 부지와 상호 교환방식으로 추진 명시

5. 공유재산관리계획과의 관계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법 제10조2(공유재산관리계획)
 - 예산의결 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 수립후 지방의회 의결
 - 환지방식 외의 도시개발사업은 관리계획 수립 대상(시행령 제7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관리계획의 명확성)
 -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을 명확히 해야 함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7호(관리계획의 예외)
 -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

나. 추진방향

- 사업위치를 특정한 후 협의취득이 어려워 수용방식으로 취득할 경우 사업기간 장기화 우려 ⇨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적기에 취득 필요
- 토지매입이 장기화 될 경우, 자전거래 등의 투기수요와 지장물 설치와 같은 추진상의 장애요인 발생 우려
- 복수후보지 추진을 통해 매입가능성이 높은 위치, 수요자인 대한적십자사의 병원 운영 적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쳐 사업추진

6. 동의(승인)사항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추진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복지·생활 편의시설을 위한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중심의 신시가지 조성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예외규정 적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을 명확히 해야하나,
-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7호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외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부지확정 후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명확성을 확보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 진행

7. 향후 추진일정

- 2023. 4. : 용역비 및 부지매입비(일부) 편성
- 2023. 5. : 군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계획 용역 계약
- 2023. 4. ~ 8. : 토지소유주 협의, 매입 또는 매도의향서 접수
- 2023. 9.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및 부지매입비 추가 편성
- 2024. 2.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 2024. 3. ~ 2025. 2. : 실시계획인가 및 기본/실시설계
- 2025. 3. ~ 11. : 부지조성공사 시행 및 준공

8. 검토의견

- 현재 부지 미확정인 상태이나 여러 후보군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군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 계획 용역 계약 전(5월)까지는 부지를 확정하고, 5월 또는 6월 중 확정된 부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임.
- 5~6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득한 후 일부 필지라도 바로 매입할 계획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부지매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의료복지타운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과 조성이 가장 급선무인 만큼 사업 대상지 매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붙임 1. 비용추계서 사유서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비,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추진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연도 (2023년)	2차 연도 (2024년)	3차 연도 (2025년)	합계
총 비용		9,300	3,200	3,200	15,700
세출	용역비	1,300	-	-	1,300
	부지매입 비	8,000	3,000	-	11,000
	공사비	-	-	3,200	3,200
	기 타	-	200	-	200

3. 관련 의견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의료·복지·생활편의 등 인프라를 갖춘 쾌적한 시가지 조성 기반 마련으로 군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8호) 및 가감정평가 자료 근거

작성자 : 전략담당관 류현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 2015. 1. 20., 2021. 4. 20.>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중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